

정정신고(보고)

2024년 11월 6일

-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삼성KODEX 차이나CSI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
-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7.11.7
- 정정 내용 :
- 주된 투자대상 명확화 및 투자한도 정정
-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- 정정사항

항목	변경전	변경후	비고
제1조 (목적 및 종류 등)	③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, 해외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(추가) 분산 투자하되, ___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을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	③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, 해외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분산 투자하되, ___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을 활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	
제15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자금 납입 및 추가자금 납입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.)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, 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.)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.)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, 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.)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
제35조 (투자한도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	



	<p>1.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4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.</p> <p>7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.</p> <p>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<p>1.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및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. 단,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하며,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.</p> <p>(삭 제)</p> <p>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	
제36조(운용 제한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___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(債權)을 포함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,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(이하 이 목에서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·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, 금융기관이 지급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___변경된 바에 따른다.</p> <p>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삭 제)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 다만, 국채증권,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(삭 제)</p>	



	<p>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 <p>다.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.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.</p> <p>13.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 <p>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, ____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13. (삭 제)</p> <p>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, ____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
부 칙	(신 설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(주된 투자대상 명확화 및 투자한도 정정)	

